

# Contents

- 02 편집자 편지
- 04 포커스  
발달장애인실종, 그리고 전담기관  
웹 접근성으로 보는 세상  
민선 7기 광역시, 도 장애인 예산 분석결과
- 24 이슈포착  
장애인학대 현황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 38 영화평  
코라도라스
- 44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1303호(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mailto: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인쇄마당 051) 464-6626

## 편집자 편지

우리는 우리나라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 출전한 양정모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앞선 1972년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 남자 휠체어 탁구 단식의 송신남 선수가 있었습니다. 패럴림픽도 올림픽이라 인정하면 최초 금메달리스트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과 연금 혜택을 똑 같이 적용한 최초이면서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2020년부터 포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전까지 말이죠. 보상에 있어 장애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킨 리더십을 보여준 셈입니다.

1988년 서울패럴림픽도 패럴림픽 역사에 의미있는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원칙이 처음 만들어져 두 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올림픽 못지않게 대중의 주목을 받는 대회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패럴림픽 공식 엠블럼도 88년 서울패럴림픽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엠블럼 이름은 '아지토스'로 바뀌었는데요.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역동적이고 운동하는 느낌으로 변형되었을 뿐, 서울올림픽 로고를 모티브로 태극 문양을 기본으로 한 서울패럴림픽 엠블럼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속 대한민국의 위상이 글로벌 장애인 정책 리더십 발취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모니터링리포트에 그런 뉴스를 소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호 <이슈포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렇지 못하네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 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신고도 많고, 이들에 의한 학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교육 실패와 장애인 학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두 편의 글이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효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과제를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커스〉에는 올해 2분기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과정에서 언급된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44호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다룬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에 이어 민선 7기 전국 광역시·도의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를 다룬 보고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웹접근성 관점에서 수행하면서 접한 ‘웹접근성으로 보는 세상’에 관한 소고를 실었습니다.

〈영화평〉에서는 류형석 감독의 영화 〈코리도라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소개해주신 류미례 감독님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첫 걸음’이라는 말로 영화의 의미를 축약해주셨네요. 하지만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친절 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카메라에 담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다큐멘터리감독들의 노력에 담긴 의미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가끔 어른들한테서 들었던 ‘마음이 성가시다’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귀찮고 싫다는 의미보다 ‘마음이 자꾸 가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해 남에게 쏟는 관심’의 의미로 저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곧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해 ‘With 코로나’ 길로 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성가진 마음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쓰다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 용 구**

## 발달장애인 실종, 그리고 전담기관

-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



## 발달장애인 실종, 그리고 전담기관

손영수 선임연구원

작년 12월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발달장애인 장씨가 실종되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3월 27일 새벽 일산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잡기 놀이와 숨바꼭질을 유난히도 좋아했다던 장 씨는 그날도 산책 중에 어머니를 앞질러서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 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씨의 실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강선우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발달장애인실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개정안의 배경과 6개월이 지난 9월 기준에서 진행 정도와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은 0.25%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2.47%로 치매 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1.72%)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아동	인구수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신고접수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미발견	3	3	6	9	105
지적장애 인 등 (연령불분)	인구수	318,205	326,776	335,760	344,594	351,435
	신고접수	8,542	8,525	8,881	8,360	7,078
	미발견	5	5	9	21	47
치매환자 (연령불분)	인구수	545,750	624,772	712,974	799,411	632,827
	신고접수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미발견	6	6	3	3	9

설령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뒤늦게 찾더라도 사망한 건수는 271건에 이르며, 실종 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도 2배 가까이 높았는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역시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제386회 상임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1. 04. 26), 강선우 의원, 2. 제387회 상임위원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1. 05. 20), 김남국 의원

이러한 발달장애인 실종 비율이 아동이나 치매환자보다 높은 원인을 크게 전담기관의 부재로 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장애인은 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종 업무(제5조)에 대해서는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실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고 있다. 즉 법률 상 정의되고 있지만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의 요구는 이전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최근 장 씨의 실종 사건의 추모식에서도 나왔다. 추모식의 성명발표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기관이 적극적인 초동수사에 나서, 사건 해결률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

지난 3월 17일 강선우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을 포함하는‘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으로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안번호 : 21088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제5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일부 발췌, 이하 생략)

2) 9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발달장애인...“실종아동’ 개념 탈피해야”, 21.03.2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8992>,

3) 발달장애인의 실종, 오직 그의 장애 때문일까?, 19.08.16

<https://www.bemim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7>

4)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수사기관 마련하라!”, 21.03.29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4>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관련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인력은 중앙은 5명, 지역은 4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설치현황은 중앙 1곳, 지역 18곳으로 중앙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등을, 지역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보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운영예산) 427백만원('21년도 기준)
-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 발견·보호·치료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교류

매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되는 '20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 및 연구결과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 실종업무를 전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최혜영 의원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안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중략)
- 최혜영 위원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에 따르면 상담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중략)
-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반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략)
- 최혜영 위원 그런데 진짜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옹호기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 〈제387회 소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1. 05. 21), 최혜영 의원 발언 중〉
- 최혜영 위원 (중략)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다른 데도 다 힘들겠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9.6%, 2020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비해서 기관 수, 종사자 수가 절반 이고요. 아보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심각 한데 노보전에 비하면 3분의 1이고 아보전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성과평가 준비를 하는 동안 직원들은 다른 학대 사례가 나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력이나 예산 문제 고민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과연 될까요? 이것 까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중략)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열악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388회 소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1. 06. 17), 최혜영 의원 발언 중>

해당 발언에 따르면 향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부여되는 장애인학대 사후관리나 성과평가에 대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현 인원으로서는 기관 고유 업무와 함께 실종장애인 대응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업무부담가중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발달장애인실종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맺으며

개정안에 대해 강선우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2배정도 책정하여(올해 27억, 내년 53억) 기재부에 전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역시 상정 이후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검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법안 취지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충북 청주의 지적장애인 조은누리양 실종 사건은 장 씨 사례만큼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실종 신고 다음날 곧바로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군(육군 37사단), 심지어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6) “실종 발달장애 아동이나 실종 발달장애 성인에 맞춤형 대응을 하려면 인력과 정책, 시스템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KBS, 21.03.27

7) 9월 15일 기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



청주시 역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 전체에 홍보문자를 돌리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조양을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고, 실종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구조되었다.

이처럼 실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군, 경에서 수색에 필요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시키는 것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종 접수 후 다음날이 돼서야 수색이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종 사건에는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미취학 아동(8세 이하)의 경우, 3시간 이내 발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실종 후 2일을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실종상황에 대한 인지부족과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골든타임을 유추해보면 미취학 아동의 골든타임보다 더 짧을 수 있고, 따라서 발달장애인 실종에 따른 빠른 조치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는 말이다.

결과론적이기는 하나 만약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이 있었고, 전담기관이 지역 내 실종 홍보나 가용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실종 초기, 골든 타임 내에 진두지휘를 했다면 '271'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기대해 본다.

8) 뉴스포스트, [애들이 어딴니] ① 실종아동 찾기 '골든타임'이 3시간인 이유, 2021.03.17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593>

## 웹 접근성으로 보는 세상

- 웹 접근성의 이해
- 웹 접근을 위한 지침
- 웹 접근성 현 상황
- 웹 접근성 적용 범위 확대와 법적 개선 필요



## 웹 접근성으로 보는 세상

한지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1. 웹 접근성의 이해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인권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자리잡아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접근권은 어떨까. 접근권이라 하면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인 비전자정보를 생각하지만 전자정보도 포함된다.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 전자정보는 접근권이라는 권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이 낮아서 인지 비전자정보에 비해 개선속도가 느리다.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언급되고 있다. 정보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은 광범위하게 전자정보 접근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제 46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는 명확하게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법의 공통점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웹 접근성’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터넷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시대이다. 정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달라진다. 즉 웹 접근성에 따라 정보 습득의 양과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은 웹사이트 접근이 쉬운 것처럼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2. 웹 접근을 위한 지침

현재 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지원, 보조기기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적 지원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원사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없기에 상시성이 떨어진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조기이다.

보조기기는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조기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다. 인적 지원은 상시적으로 지원받기 어렵고 보조기기는 웹사이트에 접근이 유용하지만 사이트의 환경에 따라 제한이 있다.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이트 내 웹 접근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의 의미와 맞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기능이 사이트별, 페이지별로 갖춰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이런 기능을 규정 및 인증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지침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다. 이 지침에서는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4가지로 접근성을 구분하고 있다. 각 항목마다 지침이 있고 총 24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구분	지침	검사항목		
인식의 용이성	대체 텍스트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폰트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대비는 4.5대1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 재생 금지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 간의 구분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입력장치의 접근성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내비게이션	반복 영역 건너뛰기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뛴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레이블 제공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문법 준수	마트업 오류 방지	마트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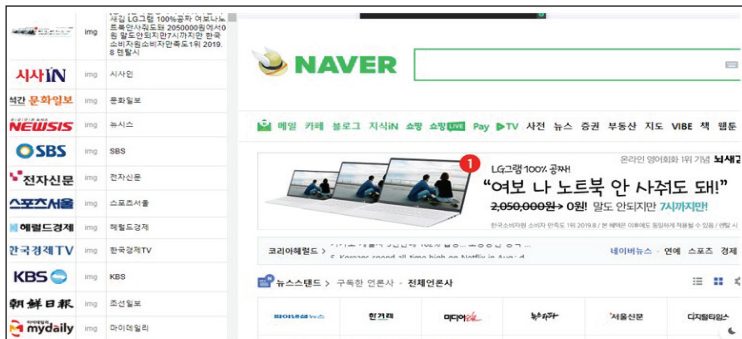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2015)

① 대체 텍스트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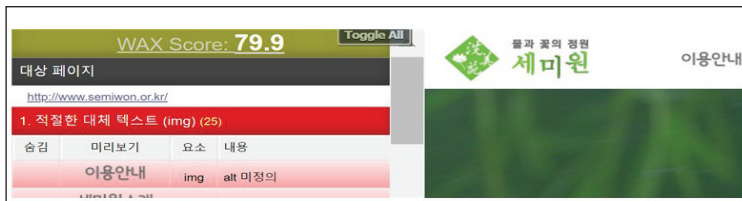
웹 접근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대체 텍스트이다. 사이트 내 콘텐츠나 본문이 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지나 기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스크린리더는 파일형식에 따라 글자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읽게 된다.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읽어내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이트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콘텐츠가 있을 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멀티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소리는 대화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와 자막이 그렇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일부 정보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수어와 자막 모두 제공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어나 자막이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적절한 예**  
 <네이버 메인페이지>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부적절한 예**  
 <세미원 메인페이지>  
 - '이용안내'가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음



## ② 입력 장치의 접근성

컴퓨터 활용에서 인터넷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우스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상지장애인의 경우 마우스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대체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키보드이다. 키보드의 'Tab'키를 사용하여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 내용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또 키보드를 이용한 조작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Tab'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마우스를 대신하는 키보드를 통한 접근이 안 된다면 전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 키보드의 'Tab'을 누르면 검은 테두리가 현재 선택 위치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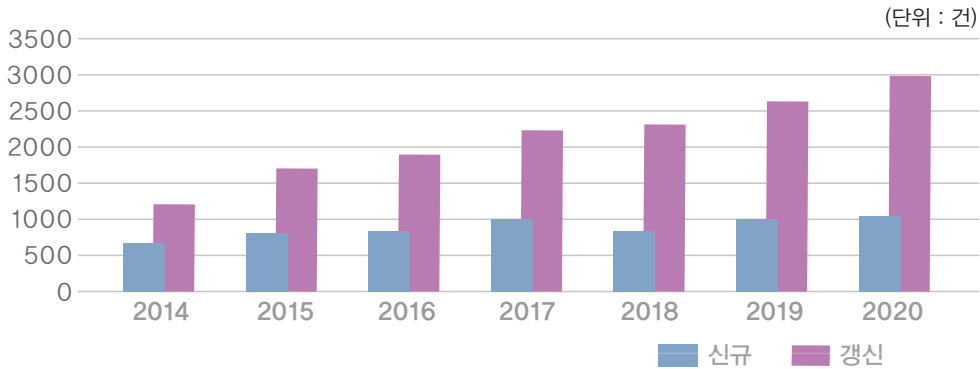
## ③ 쉬운 내비게이션

키보드로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하다해도 필요한 정보에 불편함 없이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갈 때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웹 사이트에서도 웹 접근성에 따라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침이 '반복영역 건너뛰기'다. 모든 사이트에는 상위영역이 있고 상위영역마다 하위영역이 존재한다. 하위영역에 접근할 때 마우스를 사용하면 상위영역을 건너뛸 수 있다. 키보드를 사용하면 모든 페이지의 맨 위부터 차례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복 영역을 항상 지나가게 된다.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반복영역은 건너뛰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이트에서 페이지, 콘텐츠 등 링크를 통해 접속할 때 정확한 제목을 제공하여 사이트 내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3. 웹 접근성 현 상황

이처럼 웹 접근성을 위한 기준이 생기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웹 접근성이 대두된 2009년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웹 접근성의 지침이 수립되듯 인터넷 환경도 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박스' 기능이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웹 접근성에 대한 품질인증도 점차 체계화되면서 현재 (주)웹와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세 곳의 품질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는 어떨까.

## 〈웹 접근성 품질인증현황(인증시작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신규	690	833	821	975	856	1011	1094	6,280
갱신	619	856	1111	1310	1501	1610	1917	8,924
계	1,309	1,689	1,932	2,285	2,357	2,621	3,011	15,204

(웹 접근성 연구소, 2021)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신규가 690건, 갱신이 619건으로 총 1,309건에 그쳤다. 이후 신규와 갱신 모두 점차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신규 1,094건, 갱신이 1,917건 총 3,011건으로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웹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단위 : 개, 점)

구분	사이트 수	평균 점수
도매 및 소매업	152	55.3
숙박 및 음식점업	124	53.6
정보통신업	122	63.0
금융 및 보험업	112	71.5
부동산업	106	60.8
교육 서비스업	142	6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	5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4	61.1
계	1,000	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사이트에 접근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이유는 웹 접근성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3,011개의 사이트가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훨씬 많다.



그리고 품질인증을 받았다 해도 사이트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사이트의 평균 점수는 60.7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품질인증은 받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4. 웹 접근성 적용 범위 확대와 법적 개선 필요

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웹 접근성의 적용 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 쇼핑, 정부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이거나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접속자가 적거나 관광, 레저 등 일상생활이 아닌 여가나 취미와 관련된 사이트는 웹 접근성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식개선이다. 웹 접근성이 안 갖춰져 있는 사이트의 대부분은 자신의 사이트에 장애인이 접속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 제 20조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장애로 인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접근권에는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범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꾸준한 모니터링이다.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개편할 때마다 웹 접근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문제가 개선되고 꾸준히 웹 접근성이 적용되는 사이트가 증가하면 웹 접근성의 의미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선 7기 광역시. 도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

지역별 장애인예산 비율 편차 여전히 심각

장애인 1인당 예산 시도별 최대 2.5배 차이 보여

고영란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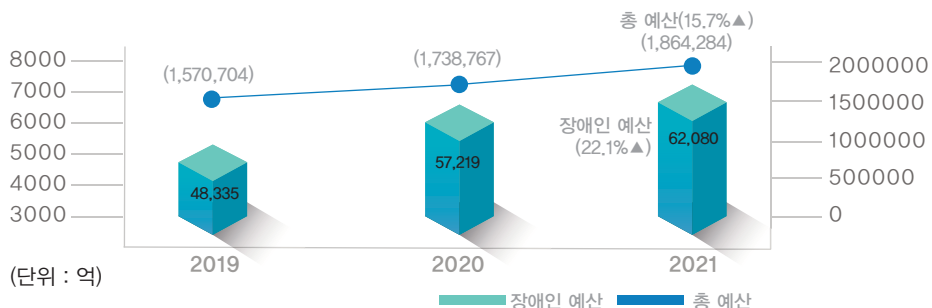
2018년 7월 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가 출범했다. 특히 많은 조선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1년은 민선 7기의 4년 차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해이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업무 중에 하나다.

이에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는 민선 7기 3년간(2019년~2021년) 17개 광역시. 도 본청의 장애인예산을 발췌, 분석, 비교하였다. 이번 광역시. 도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민선 7기 3년간 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꾸려질 민선 8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2021년 광역시. 도 장애인예산 총액 - 3년간 22.1% 증가

〈그림-1〉을 통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광역시. 도 본청 총예산대비 장애인예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17개 광역시. 도 본청 총예산은 1,864,284 억 원이다. 2019년부터 3년간 총예산은 15.7% 증가하였다. 2021년 광역시. 도 본청 장애인예산은 62,080억 원으로 3년간 22.1% 증가하였다. 총예산 증가율 대비 장애인예산은 6.4% 더 증가한 셈이다.

〈그림-1〉 광역시. 도 본청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추이(2019년~2021년)



〈표-1〉에서 2021년 17개 광역시·도 본청별 장애인예산 총액을 볼 수 있다.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292,753,738)과 경기(994,926,918)이다. 반면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9,196,024)과 제주(65,721,433)이다. 장애인예산 총액은 지역 등록장애인 인구수와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비례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예산 총액이 많은 광역시·도는 등록장애인 인구수와 장애인 관련 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 인프라의 성격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표-1〉 광역시·도 본청 장애인예산 추이(2019년, 2021년)

(단위 : 천원, 백분율)

지자체	2019년 장애인예산총액 (총예산대비 비율)		2020년 장애인예산총액 (총예산대비 비율)		3년간 증감현황	
	총액	비율	총액	비율	증감액	증감비율
서울특별시	1,063,442,712	3.0%	1,292,753,738	3.2%	229,311,026	17.7%
부산광역시	375,971,160	3.2%	473,472,811	3.6%	97,501,651	20.6%
대구광역시	299,268,890	3.6%	368,374,032	3.9%	69,105,142	18.8%
인천광역시	251,222,147	2.5%	317,011,311	2.7%	65,789,164	20.8%
광주광역시	232,789,380	4.6%	287,648,978	4.6%	54,859,598	19.1%
대전광역시	235,048,299	4.9%	303,106,144	5.3%	68,057,845	22.5%
울산광역시	137,523,722	3.8%	150,375,179	3.7%	12,851,457	8.5%
세종특별자치시	33,082,450	2.1%	49,196,024	2.7%	16,113,574	32.8%
경기도	697,781,890	2.9%	994,926,918	3.4%	297,145,028	29.9%
강원도	146,736,409	2.8%	171,359,998	2.6%	24,623,589	14.4%
충청북도	154,331,863	3.4%	190,359,407	3.3%	36,027,544	8.9%
충청남도	206,900,618	3.3%	322,503,718	4.0%	115,603,100	35.8%
전라북도	206,931,159	3.3%	263,591,558	3.3%	56,660,399	21.5%
전라남도	191,282,594	2.6%	262,482,486	2.9%	71,199,892	27.1%
경상북도	247,890,637	2.9%	315,495,371	3.0%	67,604,734	21.4%
경상남도	288,995,793	3.5%	379,645,663	3.6%	90,649,870	23.9%
제주특별자치도	64,364,835	1.2%	65,721,433	1.1%	1,355,553	2.1%
<b>평 균</b>		<b>3.1%</b>		<b>3.3%</b>		<b>2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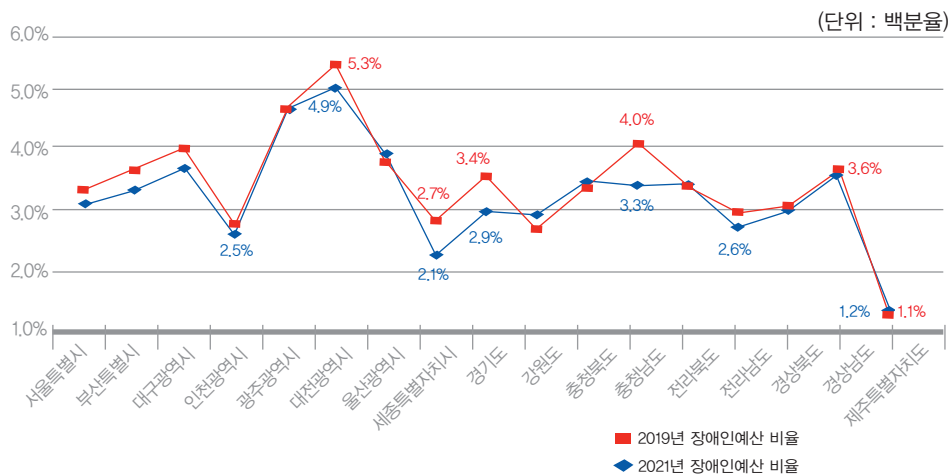
### 3. 2021년 광역시·도 장애인예산 비율 - 지역별 약 4배 편차 보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광역시·도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애인예산 비율이다. 〈표-1〉에서 2021년 기준 총예산 중 장애인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5.3%이다. 광주(4.6%), 충남(4.0%), 대구(3.9%)가 다음 순이다. 반면 제주 장애인예산 비율이 1.1%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강원(2.6%), 세종(2.7%), 인천(2.7%), 전남(2.9%) 순이다. 특히, 이 5개 지역은 장애인예산 비율 전국 평균 3.3%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인예산 비율은 전체 평균 3.1%에서 3.3%로 0.2% 소폭 상승했다. 광역시, 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3%에서 4.0%로 상승해 0.7%의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세종이 각 0.6% 증가했고, 경기도가 0.5% 증가했다. 대전이 0.4% 증가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2.8%에서 2.6%로 0.2% 하락하며 광역시, 도 중 장애인예산 비율이 가장 많은 내림세를 보였다. 울산, 충북, 제주가 0.1% 내림세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광주, 전북은 장애인예산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본청 장애인예산 비율 추이(2019년~2021년)



위 그래프에서 보듯, 2021년 장애인예산 비율의 광역시, 도별 편차는 매우 크다. 장애인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5.3%)과 가장 낮은 제주(1.1%)는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대전의 장애인예산 비율 추이를 보면 2019년에도 4.9%를 보이며,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는 2019년 장애인예산 비율 1.2%에서 0.1% 하락하며 낮은 비율을 보인다.

#### 4. 2021년 광역시, 도 장애인 1인당 예산 - 대전과 강원 최대 2.5배 차이

위 <표-2>를 보면, 2021년 17개 광역시, 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평균 2,358,000원이다. 2019년 평균 1,869,000원에서 20.7% 상승한 금액이다. 광역시, 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지역별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4,161,000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1,686,000원이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72,927명은 1인당 연간 4,161,000원 혜택을 받지만, 강원도 장애인 100,693명은 1인당 연간 1,686,000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원도 장애인 수가 1만 명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장애인에게 쓰이는 예산은 대전의 1/2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장애 정책이나 장애 관련 인프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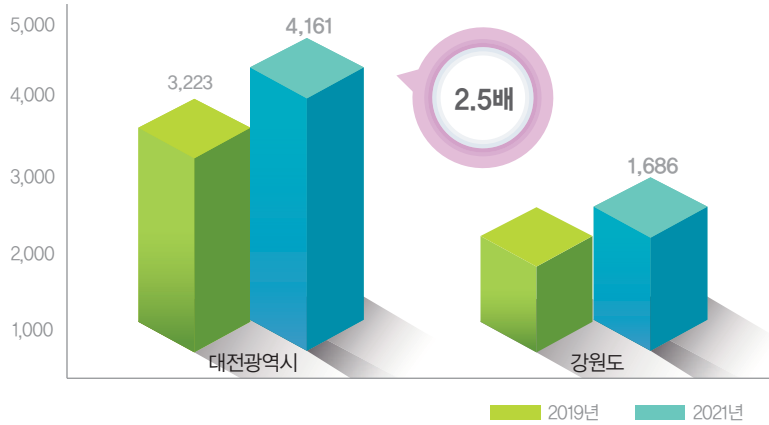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을 비롯해 광주(4,106,000원), 세종(3,985,000원), 서울(3,280,000원), 울산(2,941,000원)이 상위 5곳이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을 비롯해 경북(1,740,000원), 경기(1,740,000원), 제주(1,793,000원), 전남(1,860,000원)이 하위 5곳을 형성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인 2,358,000원에도 못 미치는 지역도 9곳이나 된다.

〈표-1〉 광역시·도 본청 장애인 1인당예산 현황(2019년, 2021년)

(단위 : 천원, 백분율)

지자체	2019년			2021년			증감 비율
	장애인총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예산	장애인총예산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 1인당예산	
서울특별시	1,063,442,712	392,920	2,707	1,292,753,738	394,190	3,280	17.5%
부산광역시	375,971,160	173,820	2,163	473,472,811	176,293	2,686	19.5%
대구광역시	299,268,890	123,070	2,4321	368,374,032	126,398	2,914	16.5%
인천광역시	251,222,147	141,771	1,7721	317,011,311	146,321	2,167	18.2%
광주광역시	232,789,380	69,884	3,331	287,648,978	70,061	4,106	18.9%
대전광역시	235,048,299	72,927	3,223	303,106,144	72,853	4,161	22.5%
울산광역시	137,523,722	50,640	2,716	150,375,179	51,122	2,941	7.7%
세종특별자치시	33,082,450	11,404	2,901	49,196,024	12,346	3,985	27.2%
경기도	697,781,890	547,386	1,275	994,926,918	569,726	1,746	27.0%
강원도	146,736,409	100,693	1,457	171,359,998	101,615	1,686	13.6%
충청북도	154,331,863	97,086	1,590	190,359,407	97,932	1,944	18.2%
충청남도	206,900,618	131,910	1,568	322,503,718	134,250	2,402	34.7%
전라북도	206,931,159	131,746	1,571	263,591,558	132,207	1,994	21.2%
전라남도	191,282,594	142,213	1,345	262,482,486	140,942	1,862	27.8%
경상북도	247,890,637	176,550	1,404	315,495,371	181,366	1,740	19.3%
경상남도	288,995,793	186,016	1,554	379,645,663	188,7491	2,011	22.7%
제주특별자치도	64,364,835	35,840	1,796	65,721,433	36,655	1,793	-0.2%
<b>평 균</b>	<b>4,833,564,558</b>	<b>2,585,876</b>	<b>1,869</b>	<b>6,208,024,769</b>	<b>2,633,026</b>	<b>2,358</b>	<b>20.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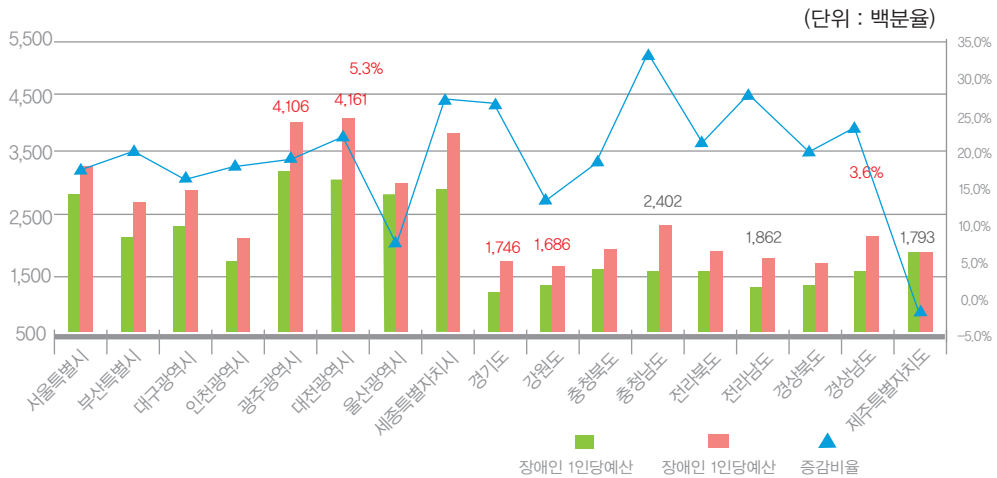
장애인 1인당 예산 비교 (대전광역시 VS 강원도)



5. 3년간 장애인 1인당 예산 증감비율(2019년~2021년)

최근 3년간 광역시, 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 증감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3년간 장애인 1인당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34.7% 증가하였다. 신규사업으로 충남 재활병원 건립이 장애인예산에 포함되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남(27.8%), 세종(27.2%), 경남(22.7%), 대전(22.5%) 순이다. 반대로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제주는 장애인 1인당 예산이 2019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울산(7.7%), 강원(13.6%), 대구(16.5%), 서울(17.5%)도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평균인 2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도 장애인 1인당예산 증감추이



## 6. 광역시. 도 장애인예산 정책 제안

이상으로 민선 7기 3년간 장애인 정책을 17개 광역시. 도 본청의 장애인예산을 통해 개괄적 현황을 살펴봤다. 아직 민선 7기 1년이 남아 있어, 민선 7기 4년간의 전체 장애인 정책예산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 지방정부와 2022년 꾸려질 지방 정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광역시. 도 본청 전체 장애인예산은 민선 7기 3년간 꾸준히 늘어 22.1% 증액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총예산대비 비율로 보면 3.3%에 불과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4만 명) 대비 등록장애인 인구(262만 명) 비율은 5.1%이다. 최소한 장애인예산비율이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인 5%대까지 도달하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17개 본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 장애인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 편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장애인예산 비율에서 대전(5.3%)과 제주(1.3%)는 약 4배의 차이를 보인다. 장애인 1인당 예산에서는 대전(4,161,000원)과 강원(1,686,000원)이 약 2.5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 정책예산의 확충은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과 지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거주 시설 보강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거주를 위한 인프라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충분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와 재활에 힘써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지원을 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지원을 통한 문화체육정보에도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인프라를 17개 광역시. 도 지역은 골고루 잘 갖추고, 또한 지역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민선7기의 1년은 주민의 삶과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지방정부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

# 장애인학대 현황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 장애인학대 현황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이미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최근 인천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당사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계속 당사자의 입안에 음식을 넣으려는 종사자의 모습과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 현상이 눈에 들어왔다. 폭력에도 학대에도 역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정 수준까지는 자극으로 느끼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어야 자극임을 느낄 수 있는 상태, 학대 역시 익숙해지면 학대를 하는 사람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정도가 뭐 어때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저런 상황을 눈감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장애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장애인학대 현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학대사례를 분석하며, 이 자료를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8월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되었는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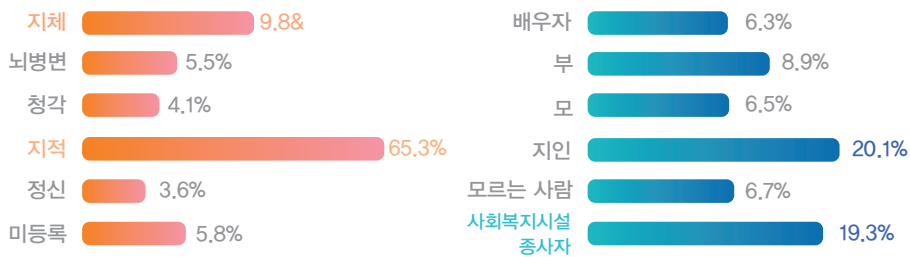
2020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208건으로 2019년(4,376건) 대비 3.8% 감소하였다. 이 중 일반적인 문의 등을 제외한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으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여부를 판정한 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중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1,008건으로 2019년(945건) 대비 6.7%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2020년 한 해 동안 최소 1,008건의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519명)이 남성(489명)보다 많았다.

- 1)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 69.6%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83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한 수치로,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67.8%(683건)로 나타난다.
-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 지역에 총 18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 2개소)이 설치되어 있다.
- 3) 학대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 됨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연령대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가 276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76명(17.5%), 30대 173명(17.2%)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인 경우가 702건(69.6%)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학대의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이 42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은 331건(32.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237건(2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이 203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5건(19.3%), 부(父) 90건(8.9%), 모르는 사람 68건(6.7%), 모(母) 66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의 주장장애유형〉

#### 〈주요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39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 150건(14.9%), 직장이 99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를 차지하였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제적 착취가 25.4%(321건),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가 24.6%(31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학대를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9건, 15.9%)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294건, 14.2%), 본인(274건, 13.2%) 순이었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는 2019년(162건)과 비교했을 때 69.1% 증가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0

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란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신고의무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의 종사자를 말하며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5) 집단이용시설은 교육기관, 의료기관(일반, 정신), 장애인복지시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등을 말한다.

년 장애인학대는 발달장애인에게 주로 발생하였고, 학대 행위자는 가까운 사람 즉, 지인이나 가족이었으며, 신체적 학대 피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 공간에서 주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학대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 즉,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0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28.5%(267건)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가 56.2%(150건)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11.2%, 30건), 미신고시설(8.2%, 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집단이용시설 피해자는 남성(58.8%)이 여성(4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28.5%), 19세 이하(20.2%), 30대(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대사례가 20대 다음으로 40대, 30대가 높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4.9%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8.3%, 방임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점 역시 전체 학대사례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가 높게 나타났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신고자 역시 전체 학대사례와 다르게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33.3%)가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5.1%), 경찰공무원(11.6%)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1.5%로 전체 학대사례의 본인 신고율 13.2%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 학대사례와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의 발생원인,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에 대해 실제 발생 사례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자료는 현재 없다. 다만, 장애인학대 현황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은 찾아볼 수 있다.

전체 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 모두 발달장애인 피해가 높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들과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자료(‘걱정하지 말고 용기있게(2020년)’,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2021년)’를 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들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본인 신고율이 낮은 집단이용시설에서 이러한 자료가 활용되어 당사자 교육이 이뤄진다면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학대하면 행위자는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2020)’에서는 2017~2019년의 장애인학대 관련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학대행위자에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대행위의 근절은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의 신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번 시행된 법률이 학대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고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일을 보고도 기존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주간보호센터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든,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든 장애인학대를 보면, 신고하여 장애인학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와 함께 빠른 현장대응도 중요하다. 장애인학대 현장의 대응이 늦어져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증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설치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인력에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기관에서 4인의 직원이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국회의 예산 심의 시기가 다가오는 요즘,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확대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와 함께 빠른 현장대응도 중요하다. 장애인학대 현장의 대응이 늦어져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설치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인력에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기관에서 4인의 직원이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국회의 예산 심의 시기가 다가오는 요즘,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확대를 기대해본다.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 의무 인권교육현황 파악 -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거의 없어..
- 인권교육 실시 현황 - 비대면교육은 급증, 대면교육 감소세
- 2019년 인권교육 교육 만족도
-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확대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센터 편집부

#### 1. 들어가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역설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매년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차별,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다양한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존재하며, 그중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실효성 문제는 실무자의 부족한 인권 의식을 야기한다.

이에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17~2019, 3년간의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결과(2020, 국가인권위원회)를 바탕으로 의무 인권교육의 실효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장애인인권 함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의무 인권교육현황 파악 -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거의 없어..

지난 2019년 1년간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시설 3,198개 가운데 거의 모든 시설인 2,953개소(92.3%)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245개 시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이 있다’는 응답이 31.8%(n= 78)로 가장 많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2.0%(n= 54), 인권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기관은 12.2%(n= 30) 이었다. 기타에 응답한 기관도 110개(44.9%)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의견 가운데는 ‘2020년에 개관한 신규시설’로 2019년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는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표 3-9를 보면 조사 대상 시설이 인권교육 시행의 바탕이 되는 근거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6.4%이며 ‘모른다’는 응답이 13.6%로 적지 않은 비율의 조사대상이 인권교육의 근거조차 모르는 상태로 교육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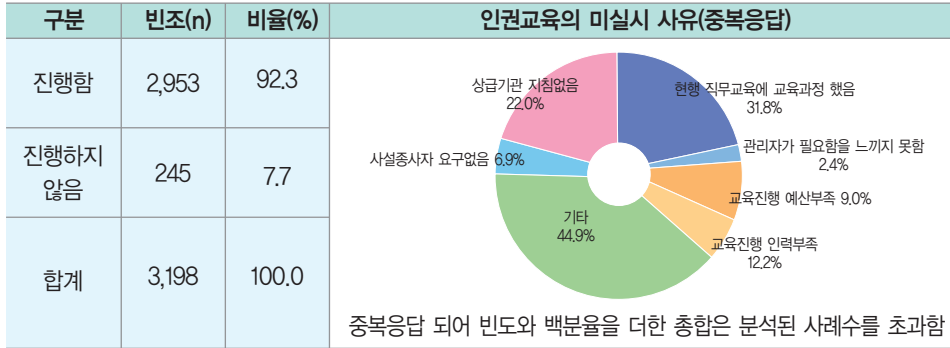


표 3-9 인권교육 시행의 근거법률 인지 여부

구분	빈조(n)	비율(%)
알고 있다	2,763	86.4
모른다	435	13.6
합계	3,198	100.0

인권교육의 근거 법률은 각 교육의 목표에 따른 차이점을 둔다. 표 3-11은 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의무 인권교육의 근거 법률이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1,358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각 법률의 의무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지 확인한 결과, 24.2%가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진행한다’고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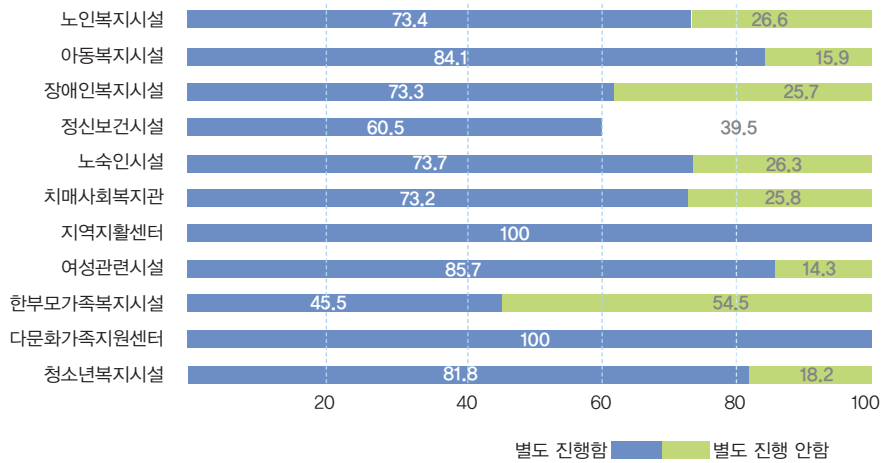
표 3-11 근거 법률 중복 시, 인권교육 방법

구분	빈조(n)	비율(%)
각각 따로 진행	1,029	86.4
함께 진행	329	13.6
합계	1,358	100.0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25.7%, 39.5%로 함께 진행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시설유형별 복수의 근거법률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방식



한편 조사대상시설이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6%의 기관이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5 인권교육 미실시 받는 불이익 인지 여부

구 분	빈조(n)	비율(%)
알고 있음	1,675	52.4
모르고 있음	1,523	47.6
합 계	3,198	100.0

불이익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98.8% 즉 대부분의 기관이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표 3-16 인권교육 미실시 받는 불이익 인지 여부

구 분	빈조(n)	비율(%)
있음	37	1.2
없음	3,160	98.8
합 계	3,197	100.0

노숙인복지법에서는 인권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과 인권교육미실시 및 불리한 처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이와 같은 해당사항이 없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마련의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3. 인권교육 실시 현황 - 비대면교육은 급증, 대면교육 감소세

표 2-21을 통해 17년~19년 3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인권교육 수강자는 445,807명이며 2017년부터 196,379명 증가하였다. 그중 2019년 사이버교육과 콘텐츠공동활용교육은 2017년부터 각 69.4%, 47.4%로 급증하여 3년간 181,706명, 25,452명이 증가하였다.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은 감소세를 보이고 인권특강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표 2-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 교육	콘텐츠 공동활용교육	
2017	횟수	4,447	494	533	1,968	915	537
	인원	249,428	28,916	10,974	101,482	79,799	28,257
2018	횟수	5,189	427	484	2,116	1,133	1,029
	인원	343,627	19,957	8,542	106,189	165,248	43,691
2019	횟수	6,282	330	556	2,699	1,363	1,334
	인원	445,807	12,527	10,694	107,372	261,505	53,709

출처 :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표 2-23 사이버교육 운영현황에 장애인차별 예방, 장애차별금지 법의 이해교육이 2017년부터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3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현황

(단위 : 명)

구분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과 인권	노인시설 인권	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차별금지 법의 이해	장애차별 예방	이주민과 인권
2017	2,928	6,135	4,858	14,474	6,099	1,855	440
2018	10,238	1,984	11,413	40,701	26,146	3,305	321
2019	9,044	3,971	110,500	27,877	13,869	188	1,687
합계	22,210	12,090	126,771	83,052	46,114	5,348	2,448

출처 :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두 표에서 콘텐츠 공동활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교육과정, 방문프로그램, 인권특강과 같이 소통이 원활하고 일정 수준 수평적 강의가 될 수 있는 오프라인교육은 감소세 혹은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사이버교육과 콘텐츠공동활용교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수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반면 관리, 상호소통이 어려워 수직적 강의, 주입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며 참여하지 않고 재생만 해놓으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큰 단점 또한 존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효성을 위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대

폭 늘리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에,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교육, 콘텐츠공동활용교육의 구성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수평적 강의, 상호소통 가능한 교육으로 개편하여 실무자들이 현장 실천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참여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출강, 공가, 시간외 근무 중 선택하여 근태를 처리하며, 인권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업무와는 별개로 의무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4. 2019년 인권교육 교육 만족도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한 2,953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89%(n=2,625)의 시설에서 교육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으나, 만족한 이유 2가지를 선택해 순서대로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순위 8.2%(n=214) 2순위 14.3%(n=365)로 낮게 응답하였다.

표 3-39 인권교육 만족도(1순위 / 2순위)

구 분	1 순위 빈도(%)	2 순위 빈도(%)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	704(27.0)	283(11.1)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681(26.1)	616(24.1)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455(17.4)	556(21.7)
새로운 인권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	107(4.1)	170(6.6)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	68(2.6)	82(3.2)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	214(8.2)	365(14.3)
사회복지조직운영 또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367(14.1)	473(18.5)
기 타	16(0.6)	14(0.5)
합 계	2,612(100)	2,559(100)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시설 또한 약 10%(n=32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스러운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반복되는 교육에서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번 수강하였던 것으로, 1순위에서 48.7%(n= 154)의 시설이, 2순위에서 29.7%(n= 91)의 시설이 불만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강의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경우도 대체로 높게 응답하였는데, 1순위로 16.5%(n= 52), 2순위로 23.2%(n= 71)의 시설에서 불만의 이유로 설명되었다. 여타 사항 또한 강의의 비전문성, 환경 등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

이에 대한 주요발언으로는

“지표상으로는 시간만 채우면 되고 또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의 평가지표이다 보니 각 시설에 사실 말기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사내에서 듣지만 바쁠 때는 켜놓고 그냥 다른 일 하거나 모니터가 2개니까 한쪽은 켜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성이 낮더라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인정해 드렸죠.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해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단. 올해는 (...) 그러다 보니 그냥 틀어놓고 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쎬. 거의 90% 넘을 것 같은데..” 가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의식 수업은 피상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듣는이가 매년 반복되는 출석체크식 강의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육 참여자의 흥미도, 참여도, 필요성 등을 저해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교육지침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재상정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 틀을 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지원 책무를 규정,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체계적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확대

먼저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교육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재활치료사, 생활지도사, 관리직원 등 모든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거주시설로 한정해 보면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의무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설장의 교육은 시설규모에 따라 교육기관을 달리 지정하고 있으며, 연간 4시간 이상 소집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사자는 소집, 방문, 사이버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총 4시간이상이다.

반면 이 의무교육의 대상이 동법 제3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으로 명시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전달체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의 의무교육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빠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6. 맺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현황을 2017~2019, 3년간의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결과(2020, 국가인권위원회)를 바탕으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위 보고서는 인권교육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관리가 되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다른 분야 인권교육과 차별성 있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발적인 현재의 교육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인권교육의 변화와 개선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인권침해와 차별,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JEONJU**  
**intl. film festival**  
**2021.4.29-5.8**

**22**

코리아도라스

Corydoras

비주얼디자인공모전

## 누군가를 격려하는 첫 걸음

### 류형석 감독의 <코리도라스>

류미례 감독

영화 코리도라스는 기존 장애인 영화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기존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시사하는 내용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영화는 그저 주인공 박동수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올해 가을에도 어김없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늘 최전선의 이슈들을 다루는데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전 세계 최신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전선 중에서도 최전선의 이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39개국에서 온 126여편의 상영작들의 세계 곳곳의 이슈들을 담으며 세상 구경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상영작 중 한 편인 류형석 감독의 <코리도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코리도라스>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박동수 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 <코리도라스>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한 게 아니라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도라스는 메기과의 열대어로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먹고 남은 사료들을 먹어서 청소용 물고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얀 몸에 까만 눈을 가진 코리도라스는 좀 뚱한 표정이라 귀엽기도 합니다.

영화의 첫 컷은 까맣습니다. 검은 무지화면이라고 생각한 순간, 문이 열리고 환



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 복도와 경사로와 횡단보도와 큰 도로를 뿔뿔히 달려 도착한 곳은 자연수족관입니다. 주인공 박동수 씨가 그 곳에서 코리아도라스를 사는 것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까만 화면에서 문이 열릴 때 관객이 볼 수 있는 것은 문턱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경사로와 횡단보도와…… 그 모든 길을 현관 문턱 만큼의 높이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건 주로 바닥입니다. 중간중간 도로의 볼록렌즈에 비탈길을 휩 지나가는 휠체어가 보이기도 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의 뒷모습이 근접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물고기들이 먼저 나오고 주인공 박동수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3분이 지난 후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롤로그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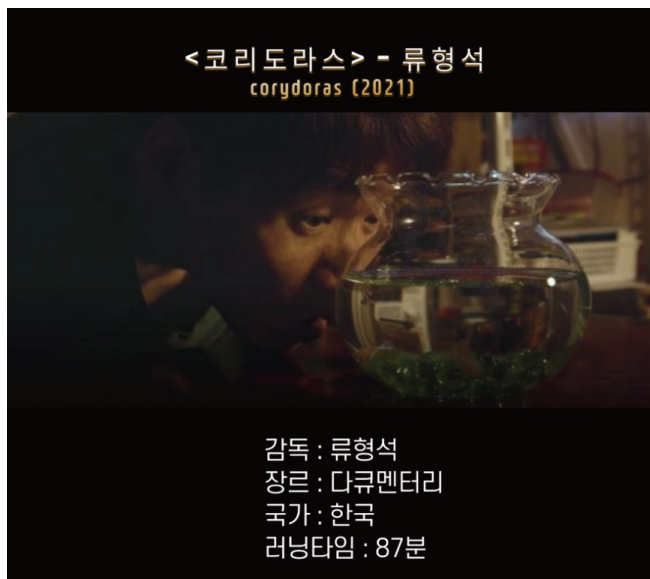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 주인공 박동수 씨가 아는 분이더군요. 2010년 원해수 감독이 만든 <동수이야기>에서는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던 박동수 씨가 등장합니다. 귀에 피어싱을 하고 헤어젤로 멋을 내던 그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동수이야기>에서는 활동지원사 광길씨와의 평등한 관계가 인상적이었는데 <코리도라스>에 등장하는 활동지원사 김진산 씨와의 관계도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여전히 논쟁 중인데 그래서 박동수 씨가 나오는 영화들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로 만난 동수 씨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동수씨는 시인이었더군요. 그런데 시가 잘 안 써진대요.

“시설에 있을 때는 희망도 없고 앞이 캄캄한 지옥 같은 이런 곳에서 살면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 시로 내가 다른 세상을 만든 것같아. 그 나라에는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름다움만 가득했어. 근데 시설에서 나오고 나서는 가끔씩만 시를 쓰게 되더라. 도망갈 데가 많으니까.”

동수 씨는 ‘도망갈 데’라고 표현했지만 시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동수 씨는 그리움이라든지 추억, 또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찾아나섭니다. 그래서 자신이 써 온 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의 시설을 찾거나 아름다운 존재를 옆에 두고 싶어서 코리도라스를 사옵니다.



물새가 날고 안개가 자욱한 호수에 동수 씨가 몸을 담그는 장면이 있습니다. 꿈처럼 환상처럼 보여지는 그 장면은 동수 씨의 시와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은빛이 가득한 호수/ 그 곳에서 잠시 쉬어봅니다/ 지치고 또 지친/ 내 영혼’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박동수 씨는 어느 시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기들 즐겁자고 만든 종이배를 무책임하게 호수에 떠내려보내는 것이 보기 싫다고 말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는 종교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말이 저 분(장애인)의 잘못도 아니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나는 그 말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호수의 물에 몸을 담근 동수 씨의 모습은 영혼의 침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수 씨가 합성을 지를 때엔 ‘이기적인 하나님’에 대한 항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은 그렇게 풍부한 영감을 주며 마음 속 얽은 막들을 떨리게 합니다.

장애라는 키워드 때문에 골랐는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시다. 영화는 사려 깊고 아름답고 새롭습시다. 소위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을 때 다큐멘터리감독들은 쉬지 않고 기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영화의 재료로만 소비하지 않기를, 이야기의 주인 자리를 독점하지 않기를, 내 주인공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류형석 감독과 박동수 씨를 함께 만나 영화 뒷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영화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동수 씨는 영화 속 자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의 잔상은 오래 남아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득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루미나리에 아래에서 휠체어를 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수 씨의 모습은 춤을 추는 것같았어요. 잔설이 남은 잔디밭에서 발가락으로 조정기를 움직이며 RC카를 모는 동수 씨의 신나는 표정에서는 자유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 몸담고 있었던 시설을 떠나 자립생활을 꿈꾸는 한 장애 여성의 체험담 한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회의만 다녀온 상태인데 기대가 큼니다.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에서 그 분의 한 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일 목록 중에 ‘염색하기’와 ‘서울 야경보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자유를 찾아서 시설 밖으로 나온 분들의 첫 걸음 덕분에 뒤에 오시는 분들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코리도라스>는 그런 의미에서 최전선 중에 최전선에 서있는 영화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류형석 감독님께 감사 드리며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899-8318)





2021년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공모요강**



## 2021년 제16회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공모요강

### 1.공모개요

공모전명 : 2021년 제16회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공모주제 : 자유주제 - 제품, 공간, 시각정보 및 콘텐츠

지정주제 -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공모주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후 원 : 보건복지부, 한국복지대학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웹와치(주)

### 2.공모일정

작 품 접 수 : 2021. 10. 13(수) ~ 10. 19(화) 15시 마감 / 온라인접수

1차작품심사 : 2021. 10. 22(금) ~ 10. 26(화) / 온라인 심사

1차결과발표 : 2021. 10. 28(목)

2차작품심사 : 2021. 11. 10(수) / 현장 심사

예비수상작게시 : 2021. 11. 16(화) ~ 11. 19(금)

최 종 발 표 : 2021. 11. 22(월)

수 상 작 접 수 : 2021. 11. 22(월) ~ 11. 30(화)

- 특선 이상 작품에 한해 원본파일 및 보드(A2사이즈) 제출

- 우편으로 제출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작품은 전시회에 사용예정이며 미제출시 수상 취소됨

전 시 회 : 예정

시 상 식 : 예정

※ 상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모전 홈페이지([www.udcontest.com](http://www.udcontest.com))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 및 시상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참가자격

참가자격 : 자격 제한 없음, 누구나 참여가능 (출품료 없음)

참가부문 : 대학·일반부 / 중·고등부

참가인원 :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 (출품수량 제한 없음)

### 4. 출품 부문

#### 자유주제

부 문	개 요	관련분야
제품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를 살림과 동시에 풍요로운 인간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서,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사무기기 및 문구, 산업기계 및 운송기계, 레포츠 용품, 교육용품, 가구 디자인 등
공간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를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및 실내 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주거 공간, 업무 및 상업 공간, 전시 공간 등
시각정보 및 콘텐츠 디자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감각, 언어 등의 제약 없이 유니버설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상호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해 유니버설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단순 캠페인 포스터 형식의 작품은 지양[止揚]함	모바일, 타이포그래픽, 픽토그램, 편집디자인, 복디자인, 바닥 및 간판 사인물, UI, UX,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

#### 지정주제

부 문	개 요	관련분야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화재, 교통사고, 홍수, 산사태, 해일, 지진 등의 천재지변, 인재사고에 의한 안전에 관련된 디자인 /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을 예방, 방지,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한 디자인	전 분야 (제품, 공간, 시각정보 및 콘텐츠 등)

## 5. 시상내용

### 대학·일반부

구 분	인원(팀)	상장 및 상금	비 고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1점	500만원	
한국복지대학교총장상	1점	300만원	
최우수상	2점	각 150만원	
우수상	3점	각 50만원	
장려상	5점	각 30만원	
아이디어상	다수	-	
특선	다수	-	
입선	다수	-	

### 중·고등부

구 분	인원(팀)	상장 및 상금	비 고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상	최우수상	1점	600만원
	우수상	3점	각 30만원
	장려상	5점	각 10만원
특선	다수	-	
입선	다수	-	
지도교사상	3명 이내	-	

※ 작품 수준과 응모작 수에 따라 시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심사 및 시상은 자유주제와 지정주제 구분 없이 전체 부문에서 (제품, 공간, 시각정보 및 콘텐츠,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시상함.

## 6. 제출방법

### 작품 접수(온라인)

1. 제출대상 : 공모전 출품자
2. 제출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http://www.udcontest.com/>)
3. 제출기간 : 2021. 10. 13(수) ~ 10. 19(화) 15:00 마감
4. 제출물 : 2021. 10. 13(수) ~ 10. 19(화) 15:00 마감
  - ① UD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서 작품접수 시 체크리스트에 작성(작성 이후 작품접수 가능)
    -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유통성, 손쉬운 이용, 정보이용의 용이, 안전성, 편리한 조작, 적당한 크기의 공간 등 7가지 UD원칙에 준하는 작품인지 점검
  - ② 이미지 파일(작품)
    - A2(420X594mm), 파일형식(jpg), 색상모드(RGB), 해상도(300dpi)로 자유롭게 구성
  - ③ 작품설명서
    - A4, 자유양식으로 디자인 배경 및 작품 설명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 참고)
    - 작품설명서는 특선이상 수상작에 한해 공모전 카페에 게재함.

※ 주의사항 : 작품과 작품설명서에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내용 금지!!



## 수상작 접수 (온라인 및 우편/방문)

1. 제출대상 : 특선 이상 수상작품

2. 제출기간 : 2021. 11. 11(목) ~ 11. 22(월) 18:00

3. 제출물 :

① 출력보드 (A2 size(420X594) 폼보드) – 우편/방문 제출

※ 보드형태: 흰색 폼보드/10mm/최대 2매까지 작업 가능

② 원본파일 (A2 size(420X594) – 공모전 홈페이지 제출([www.udcontest.com](http://www.udcontest.com)))

a. 포토샵 : PSD / CMYK / 300dpi

– 캔버스사이즈 426X600로 작업

– 글씨(Text)레이어는 모두 이미지화하여 저장, 레이어는 모두 살아있게 저장

b. 일러스트 : ai 또는 eps / CMYK / 300dpi

– 도큐먼트 사이즈 426X600로 작업

– 글씨(font)는 모두 Creat Outlines(윤곽선 만들기)적용  
도형화하여 저장

※ 1차 제출한 작품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제외한 색상 및 형태 등 수정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작품심사

학계, 업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장애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실시

## 8. 주의사항

- ▶ 출품물에는 출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기를 금함.
- ▶ 출품보드는 다시 반환하지 않음.
- ▶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사와 응모자에게 있음.
  - 단, 주최 또는 주관기관은 모든 출품작의 비상업적 활동에 한하여 홍보자료, 교육자료, 출판 및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수정·보완하여 공공 및 민간에 보급할 수 있음.
  - 제출된 작품의 표절시비 등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수상작에 한해서는 주최사가 퍼블리시티권, 활용권, 전송권을 가짐.
  - 수상작의 제품화·상용화 등 상업적 이용 시에는 협의하여 원저작자에 저작권료를 지급함.
- ▶ 다음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출품 할 수 없음.
  -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된 디자인 (ex. 타공모전 수상작 및 상품화된 작품)
  -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본 공모전에 명시된 출품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 ▶ 형성 또는 표제 등으로 보아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다작을 출품하였다 할지라도 1점의 출품으로 간주함.
- ▶ 본 공모전 입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다른 기관의 공모전에 중복 공모는 불가능함.(단, 국외공모전의 중복공모는 가능함)

- ▶ 표절 및 모방에 대한 재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와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름.
  - 외국사례 모방 또는 타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함.
  - 수상 후이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상금을 회수함.
-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 심사결과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및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함.
- ▶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이니 반드시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9. 방문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우)072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전 화 : 02-833-3095, 070-7730-3005

팩 스 : 02-833-3096

이 메 일 : ablefor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udcontest.com

카 페 : cafe.naver.com/udcontest

유 투 브 : www.youtube.com/channel/UCH9wOdMcrqv8NKJLZX3jBhQ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udcontest

www.webwatch.or.kr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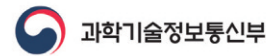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Mobile Accessibility  
모바일 접근성 인증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Software Accessibility  
소프트웨어 접근성 인증

VENTURE  
벤처인증기업

INNOBIZ  
기술혁신영종소기업



WebWatch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